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 61 조 (학칙의 <u>신설</u> 및 개정) <u>총장은 학칙의</u>	제 61 조 (학칙의 <u>제정</u> 및 개정) <u>이 학칙을 제정</u>
신설 및 개정안을 작성하며, 대학원위원회의 심의	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는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
를 거쳐 대학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·시행한	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
후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	포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 공고 및
	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	1. 관련 법령,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사항을
	반영한 하위 규정의 개정
	2.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을 반영하는 규정
	개정
	 3. 단순한 자구 수정,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
	부칙
	<del></del>
	① (시행일) 본 개정학칙은 2019년 6월 24일부터
	<u>시행한다.</u>